## 광운대학교 기술료 분배 지침

제정일 : 2020. 03. 01.

개정일: 2024. 02. 01.

제1조(목적) 광운대학교 기술료 분배 지침은 광운대학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광운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분배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기술료 분배기준) 발명의 실시허락,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한다.
  - 1. 발명자 : 50% 이상
  - 2. 기술사업화 소요경비: 15% 이상
  - 3. 기여자 : 10%이상
  - 4. 연구개발재투자 : 5% 이상
  - 5. 산학협력단 사업화 경비(운영비): 15%
- 제3조(기여자 선정) ① 산학협력단 지정 기여자는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써 기술이전의 전략수립, 기술 평가, 마케팅, 협상, 계약체결,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소속된 자로 기술 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
  - 2.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시장성평가, 가치평가,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
  - 3. 미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설명회 주관 및 참여, 국·내외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실시기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자
  - 4.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
  - 5.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
  - 6.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·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
  - 7.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·소송·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
  - 8. 기타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
  - 9. 기술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일 경우
  - ② 상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발명자가 지정하는 자를 기여자로 한다.
  - ③ 기술이전 기여자 지정이 없는 경우,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별도 계정으로 지정하여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- ④ 기여자는 발명자와 중복될 수 없다.

- 제4조(기여자 인센티브 지급시기) ①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기여자 인센티브는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술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 말에 기술이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별도 위원회 승인 하에 지급한다. ② 대표발명자 지정 기여자 인센티브는 기술료 분배시점에 지급한다.
- **제5조(연구개발재투자)**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.
  - 1. 매년 1월~12월까지 회수한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차년도에 직전 년도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로 지급한다.
  - 2. 우수 연구자 선정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

(1) 본 지침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 계약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본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 계약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본 지침은 2024년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 계약부터 시행한다.